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6호 2021. 9. 15.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070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공사 완료 공고.....1
- 정선군 공고 제2021-1110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1-1112호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9
- 정선군 공고 제2021-114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방재 IoT 구축사업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18
- 정선군 공고 제2021-1141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제정 조례안.....21
- 정선군 공고 제2021-1146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34
- 정선군 공고 제2021-1173호 「강원카지노·리조트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39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070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20-208호(2020. 8. 21)로 변경 인가 고시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9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변경)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금회시행)

(단위: m²)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금회 시행	
공원	임계3 어린이공원	2,441	■ 임계3 어린이공원 변경 조성 A=2,441.0m ² - 편익시설 18.0m ² - 유희시설 322.0m ² - 운동시설 150.0m ² - 기반시설 893.0m ² - 녹지 및 기타 1,058.0m ²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일 : 2021. 7. 20

정선군 공고 제2021-1110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 가. 정선군 정책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이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관으로 변경하고,
- 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발히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3.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자문관 구성 기준 전문성 강화 및 구성인원 축소(제3조 구성)
- 다. 정책자문관 예산지원(자문료, 연구비, 수당, 여비 등)과 위탁운영 규정 신설(제5조 예산지원)
- 라. 정책자문관의 직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권리 명확화(제6조 권리)
- 마.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 신설(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4. 전부개정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1. 9. 1. ~ 2021. 9. 21.(20일)

6. 의견제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1(화)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획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14), 팩스(033-560-2592)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 전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을 둔다.

②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 2.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자격박탈) 군수는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4.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협업 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군이 갖는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관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흘리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선군 공고 제2021-1112호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정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서식 및 방법 규정 (안 제2조)
- 나. 자문료 및 연구비 지급액 및 신청 절차 규정(안 제3조)

3. 시행규칙 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9. 1. ~ 2021. 9. 21.

5. 의견제출

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 전 화: 033-560-2214

☞ F A X: 033-560-2592

☞ E-mail: edu041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별지 제1 호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 이라 한다.)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료 및 연구비) 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관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및 연구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료와 연구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구비는 자문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4조(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정책자문관 자문료(제3조 제2항 관련)

구 분	지급금액(한도액)
자문료 (대면, 서면, 통신, 화상 등)	회당 200천 원
연구비	22,000천 원

※ 정선군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따라 편성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서 (제2조 제1항 관련)

제목				
자문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E-mail	
	전화번호			
자문사항				

-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제2조 제2항 관련)

자 문 내 용				
제 목				
자 문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E-mail	
	전화번호			
자문사항				
※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				
의 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책자문관 ○ ○ ○ (서명)</p> <p>정선군수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자문료(연구비) 청구서 (제3조 제1항 관련)

과제명					
자문일	20	제출완료일	20		
자문부서					
정책자문관 성명					
청구금액	금 액	금 원(₩)			
	내 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예금주		연락처	
자문의견	별첨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114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방재 IoT 구축사업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국보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에 대하여 화재 및 훼손·도난 등 문화재의 안전과 재해 발생 대비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방재 IoT 구축사업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번지 소재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방재 IoT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3.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방재 IoT 구축사업
- 나. 시 행 자 : 정선군 문화관광과
- 다. 설치장소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
- 라. 설치대수 : CCTV 2대

4. 공고개요

- 가. 공고기간 : 2021. 9. 7. ~ 2021. 9. 26.(20일간)
- 나.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

성하여 정선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7. ~ 2021. 9. 26.(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 팩스

다. 제출처 : 정선군 문화관광과

- 우 편 : 강원도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전 화 : 033) 560-2564

- F A X : 033) 560- 2593

라.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명) 등 인적사항

마.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 예고대로 시행합니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방재 IoT구축사업」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방재 IoT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1141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제정 조례안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7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시설의 운영(안 제3조,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및 행위제한(안 제8조)을 규정 함
- 나. 체험료 면제·감면 및 반환을 규정 함(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 다. 시설 운영 활성화(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및 위탁관리(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를 규정 함
- 라. 수탁자의 의무(제18조에서 제19조까지) 및 위탁운영의 해제해지(제20조)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시설국 산림과
- ▶ 전 화: 033 - 560 - 2252
- ▶ 팩 스: 033 - 560 - 2019
- ▶ 이메일: revamp2018@korea.kr

- 붙임 1.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자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관리와 운영

제3조(운영)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 ③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 ④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강사 초빙 등) ① 군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8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6.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체험료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한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선군 관내로 둔 사람 또는 명예 정선군민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
 7. 폐광지역 주민(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 단, 그 지역주민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또는 그 밖에 폐광지역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11조(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전액 반환

-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나. 제12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 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일부 반환
-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때: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3. 체험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편의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 2. 유아 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착유)
- 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체험장 운영 활성화) 군수는 체험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제14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만약 군수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및 재산손실을 대비하여 사전에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험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제1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9조(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0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관련 법령, 조례, 위탁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7.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8.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수탁자는 군수에게 체험장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수입금의 처리) 체험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3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별표 1] 위치 및 기능 등

구 분	내 용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시 설	· 목재전시체험관, 목재놀이터, 목공체험실(창고), 야외교육장 · 무장애 데크경사로,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기 능	·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 목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별표 2]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목공예체험	성 인	5,000	개인 체험료의 100분의 70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어린이	5,000		
목재전시관	성 인	무료 운영		
	어린이	무료 운영		

[비고]

1. 목공체험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목재전시체험관, 목공체험실 등으로 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감면(제14조제2항제7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 험 료		비 고
목공예체험	성 인	3,500	정선군·삼척시 태백시·영월군 보령시·화순군·문경시
	어린이	3,500	
목재전시관	성 인	무 료	
	어린이	무 료	

※ 정선군·삼척시·태백시·영월군·보령시·화순군·문경시 주민은 반드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발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 이용 증진 등)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①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1146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정 선 군 수

1. 전자우편 주소 : jswebmaster@korea.kr
2. 접수기간 : 2021. 10. 10.(일) ~ 2022. 1. 8.(토)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서(서식) 1부
2.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3. 관계법령(공직선거법) 1부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서(서식)

[별지 제59호의4서식] (규칙 제136조의4제1항 관련) <개정 2019. 5. 30.>

<앞쪽>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서¹⁾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 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서명)

성명 ²⁾	한글	영문 (대문자)			
여권번호		[Red dashed box]		*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	
신분에 따른 구분 ³⁾ ※해당 칸에 [표]한 후 기재)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input type="checkbox"/>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대한민국 최종주소지	[Red dashed box]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생년월일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성별 (해당 칸에 [표])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등록기준지 (본적지)	[Red dashed box]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부모성명 ⁴⁾	아버지성명 [Red dashed box] 어머니성명 [Red dashed box]	
연락처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전화번호 ⁵⁾ (가정·직장 등)	(국가번호) [Red dashed box] (지역번호) [Red dashed box] (전화번호)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휴대전화번호 ⁵⁾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 [Red dashed box]			
	전자우편 ⁶⁾ (E-mail)	[Red dashed box]			
국외거소 ⁷⁾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 ※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거류국명	[Blue dashed box]	우편번호	[Blue dashed box]	
	주소	[Blue dashed box]		<input type="checkbox"/> 공관을 개소 신고할 사람 ([표]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 기재) 투표예정공관 ⁸⁾	
외국국적 보유여부 ※ 복수 국적자만 기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국적보유 국가명				
	외국국적 취득사유	<input type="checkbox"/> 출생 <input type="checkbox"/> 혼인 <input type="checkbox"/> 입양 <input type="checkbox"/> 인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218조의5)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을) 하며,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⁹⁾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정선군수 귀하					

*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재외공관에 신고·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뒤쪽>

※ 유의 사항

1. 이 신고·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신청인에게 불이익(재외선거인명부등 미등재,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거짓으로 신고·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요령

1.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성명"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 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신분에 따른 구분"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표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당 칸에 표시 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를 적어야 하며,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표시 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적고 "성별"의 해당 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부모 성명"칸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요건확인,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투표기간·장소 등 안내,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E-mail)"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7. "국외거소"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 후 "주소"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
8. "투표예정공관"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9. 끝부분의 "(신고인)·(신청인)"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붙임 2**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예시)**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 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91일간)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jswbmaster@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붙임 3**관계 법령(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5. 여권번호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1-1173호

「강원카지노·리조트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정 선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개요

- 가. 명 칭: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
- 나. 위 치: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읍 일원
- 다. 면 적: (당초) 8,961,500m² → (변경) 7,017,177m²
- 라.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 마. 사업시행자: (주)강원랜드
- 바. 사 업 비: 2,292,006백만원(기투자 2,216,780백만원)
- 사. 변경사유: 2018년 12월 7일 정선군고시 제2018-219호에 의거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되었으나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고시(11차)(강원도 고시 제2021-289호)내용에 적합하게 면적을 변경하고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반영하고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함

2. 주민열람 일시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2021. 9. 15 ~ 2021. 9. 30 (공고일로부터 15일)
- 나. 열람장소: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350)
- 다. 관련도서: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공청회 개최 공고

- 가. 목 적: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의견 청취
- 나. 일시 및 장소
 - 1) 일 시: 2021. 10. 08(금요일) 14:00 ~ 16:00

2) 장 소: 하이원팰리스호텔 연회장(소나무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30인 미만으로 입장 제한

다. 내 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 변경,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구역 분할 계획, 분할구역별 사업계획 설명

라. 발표자: 발표자는 지역개발전문가, 주민대표, 사업자대표 각2명으로 하며, 추가 발표를 원할 경우 아래의 참석 신청 및 의견제출 방법에 따라 신청

4. 공청회 참석신청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참석신청: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30인 미만으로 입장을 제한함에 따라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청회 참석신청서(붙임1)를 제출

1) 제출기간: 2021.9.30.(목)까지

2) 제출방법: 전자우편(jeuis7@korea.kr) 및 팩스(033-560-2594)

3) 입장제한 사항

-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14일 이내 해외여행 경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손소독 및 발열체크를 거부하는 경우
- 행사장 내 거리두기 좌석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 사전에 참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행사장 수용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의견제출:

1)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붙임2)으로 제출

2) 공청회 개최 후 2021.10.20.까지 전자우편(jeuis7@korea.kr) 및 팩스(033-560-2594) 제출

3) 공청회 참석을 못하신 분은 정선군 홈페이지 동영상 시청 후 의견서(붙임2)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청회 참석신청서

2. 의견서

